

보도 시점 2024.1.17.(수) 12:00 배포 2024.1.17.(수) 10:00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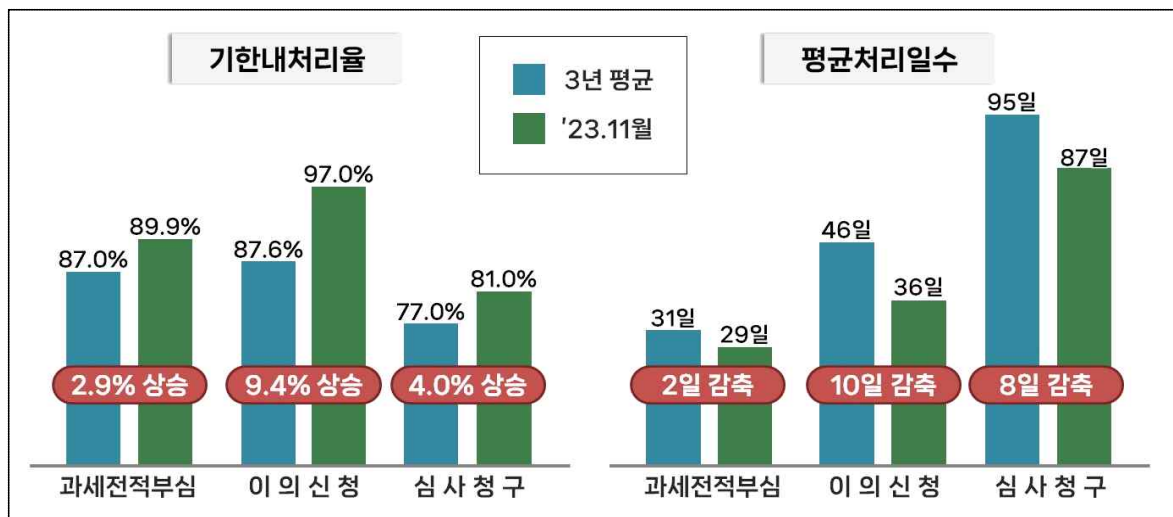
[2024년 국세청 정책 돋보기]

납세자 권리구제, 더욱 신속하고 공정하게!

- 조기처리 대상 확대로 신속한 불복처리를 지원하고,
과세사실판단자문에 대한 납세자의 알권리 보장 -

□ 국세청(청장 김창기)은 납세자의 억울한 세금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국세심사위원회 등 여러 위원회 운영을 통해 노력해 왔습니다.

○ 지난해 국세심사위원회 운영과 관련 **안전별 진행상황 관리, 권리구제 우수직원 포상 확대** 등 신속처리 방안을 중점 추진한 결과, 이의신청 등 불복사건의 기한내 처리율과 평균처리일수가 대폭 개선되었습니다. ('23년 11월)



○ 또한, 지난해부터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¹⁾(이하 과판위) 개최에 앞서 심의자료를 납세자에게 공개하는 **사전열람제**도를 시행²⁾하였습니다.

1)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는 과세쟁점 사실판단 사항에 관해 국세공무원에게 자문을 제공하는 내부 기구로 신청권은 국세공무원에게만 있고 위원회 결정의 구속력은 없음

2) 본청 시범운영('23. 2월) → 지방청·세무서 확대 시행('23. 7월)

- 이에 따라, 납세자는 심의자료를 사전에 열람하여 자신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되었는지 **확인**하고, 회의에서 진술할 내용에 대해서도 충분히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

- 올해에도 더욱 신속하고 공정하게 납세자 권리를 구제할 수 있도록 **조기처리 대상 불복 사건을 확대**하도록 하겠습니다.
- 국세청은 **일정 요건을 갖춘 소액 사건***의 경우 국세심사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고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는 「**조기처리 제도**」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- * 3천만 원 미만으로서 사실판단사항이거나 위원회를 거쳐 결정된 유사사례가 있는 경우
- 올해에는 조기처리 기준금액을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대폭 **상향**하여 더욱 많은 납세자가 불복결과를 신속히 받아볼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.
- 아울러, 조기처리 사건에 대해서도 복수의 심리담당 직원이 심층토의 후 결정하도록 「**조기처리분석반**」을 확대 운영*하여 납세자가 신속하면서도 **공정한 결정**을 받을 수 있도록 보완하겠습니다.
- * (현행) 과세전적부심, 심사청구 → (개선) **이의신청**, 과세전적부심, 심사청구
- 또한, 과판위 **의결 결과**를 납세자에게 **통보**해 주는 「**자문결과 통지제도**」를 신설하여 납세자의 **알 권리**를 보장하고, 향후 불복청구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
- 본래 과세사실판단지문의 신청권이 국세공무원에게만 부여되어 있었기 때문에 과판위 **의결 결과**를 국세공무원에게만 통지해 왔고 납세자는 국세공무원을 통해서 결과를 알 수 있었습니다.
- 납세자가 과판위에 직접 출석하여 적극적으로 소명 노력을 기울인 만큼 그 결과도 안내받을 수 있도록 **올해부터는 의결 결과**를 납세자에게 **직접 통보**하여 더욱 공정하게 과판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.
- 앞으로도 국세청은 적극행정을 토대로 신속하고 공정한 납세자 권리구제를 위해 불복제도와 과세사실판단지문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.

담당 부서	납세자보호관실	책임자	과 장	이상걸 (044-204-2741)
	심사1담당관실	담당자	사무관	전강식 (044-204-2742)
	납세자보호관실	책임자	과 장	이상원 (044-204-2771)
	심사2담당관실	담당자	사무관	박준배 (044-204-2772)

참고 1

국세심사위원회

□ 위원회 개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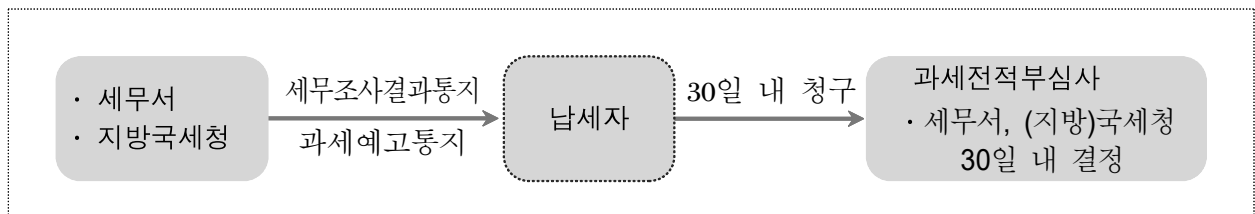
- 과세전적부심사청구,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심의·의결을 위해 세무서·지방청·국세청에 국세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음

□ 불복제도 개요

○ 사전 권리구제(과세전적부심사청구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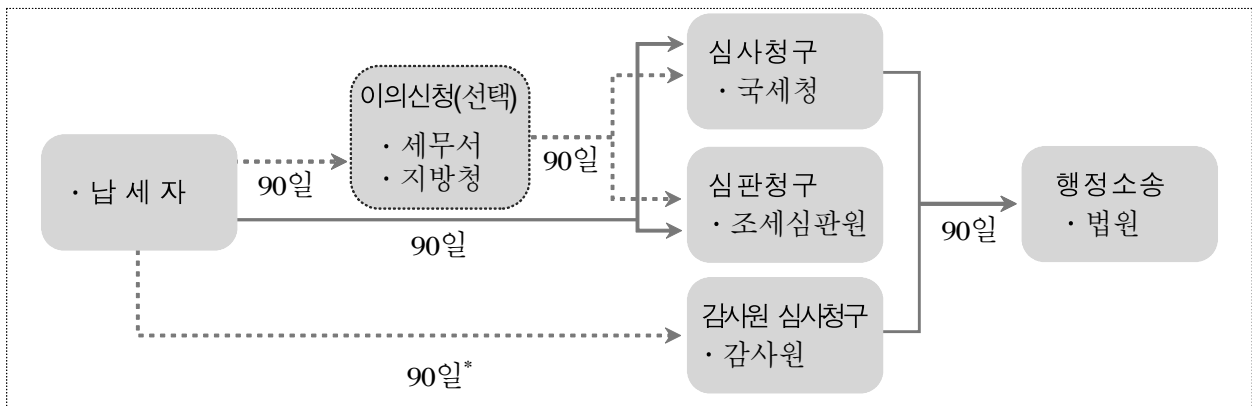
- 세금고지서를 받기 전 단계에서 과세예고통지 등을 받은 납세자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**통지 내용의 적법성을 심사**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제도

* 청구금액 10억 원 이상인 경우 등은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음



○ 사후 권리구제(이의신청·심사청구)

- 납세자가 **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**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해 **권리를 침해**당한 경우 그 **처분의 취소**를 청구하거나 **필요한 처분**을 청구하는 제도
- 세무서 또는 지방청 **이의신청**을 거쳐 **심사청구**를 하거나, 이의신청을 하지않고 **바로 심사청구**를 할 수 있음



*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는 심사청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,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 제기

참고 2

과세사실판단자문제도

□ 제도 개요

- 목적 : 국세공무원이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**과세쟁점사실의 판단사항**에 관해 납세자와 이견이 있는 경우, **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의 자문**을 받도록 함으로써 **과세품질**을 향상하고 **국세행정** 업무의 **합리성**을 도모하려는 **국세청 내부의 자문제도**
- 연혁
 - '05. 9월 각 지방청에 위원회 설치 ⇒ '06. 1월 세무서까지 확대 시행
 - '07. 6월 과세쟁점자문사무처리규정 제정(종전: 지침으로 운영)
 - '10. 3월 과세사실판단자문제도로 명칭 변경
 - '14. 5월 과세불가 의결정족수 개정(2/3 → 과반수)
 - '16. 9월 쟁점세액 100억 원 이상 고액사건은 본청에서 자문

□ 제도 운영

- 대상 : 세무조사 등 업무처리 중 과세쟁점사실이 발생한 사항
- 신청 : 국세공무원(신청인)이 **과세사실판단자문 신청서**를 작성하여 세무서 및 지방청 **납세자보호담당관**에게 제출
- 결정 : 위원장(납세자보호담당관)을 포함한 구성원 **과반수 출석**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**과반수 찬성**으로 결정
- 결정의 종류 : **과세불가, 일부과세, 과세, 기타**(판단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)

□ 위원회 구성

- 과세사실판단자문은 **과세관청의 내부절차**로 위원회는 **내부위원**으로만 구성

구 분	위원장	위원	위원수
본 청	납세자보호관	상임 3인(법무, 법규, 심사), 비상임 3인	7인
지방청	납세자보호담당관	지방청 소속 과장(4인) · 팀장(2인)	7인
세무서	납세자보호담당관	세무서 소속 과장(2인) · 팀장(4인)* (* 2급지의 경우 팀장 2인)	7인(5인)